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한 신설 등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5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한 신설 등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5. 2.

다. 회 부 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Ⅲ. 검토의견

1.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한 신설 등(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가. 개정안 요지

-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지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⑥ (생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u>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u>한다</u> .	⑦----- ----- ----- <u>5년 이내의 기간을</u> <u>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u> ----- ----- <u>하</u> <u>며,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u> <u>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⑩ ~ ⑫ (생략)	⑨-----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항에 따라 부과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⑩ ~ ⑫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제1항부터 제4항)1),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보상금(이른바 ‘교육 목적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제6항)2),

- 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2)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

저작재산권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³⁾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제7항)⁴⁾.

- 위 ‘교육목적 보상금’ 관련 규정은 ‘도서관 보상금’(제31조),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제75조·제82조)·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제76조·제83조)·공연자(제76조의2·제83조의2) 보상금’ 등에 대해서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⁵⁾
- 보상금 제도는 공익성이 높은 교육 분야의 저작물 이용과 기술 발전(복제 등)에 따른 음악 저작권자에게 대한 보상을 위하여 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저작물 이용자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 이용 후 저작물 이용내역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고, 권리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가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현재 ‘교육목적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은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실연자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반제작자 보상금’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4)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5) 보상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은 첨부한 [참고1]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3개의 보상금수령단체(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협회, 연예제작자협회)를 지정하여 저작권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 일정기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지정 시에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단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상권리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에 대한 부관⁷⁾으로 일정 기간마다 진행 중인 ‘보상금수령

6) 한국일보, “한강 작품 교과서에 11건 쓰였지만, 지급된 저작권료는 ‘0원’... ”연락처 몰라 안 줬다””, 2024. 10. 17,

전자신문, “문저협, 미분배 저작권료 100억원 넘었다...“분배 노력 부족”“, 2024. 10. 15. 등

7)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

단체 적격심사 제도’⁸⁾를 법제화하여 지정단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상권리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전부 수용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조직의 사유화, 보상금 분배업무의 적정성 담보와 함께 사업자나 단체를 지정하여 특정한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지정기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한국음음악실연자연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지정 보상금수령단체에서는 현재도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취소, 업무수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개정안 부칙⁹⁾에서 종전 지정단체의 지정기간을 일괄적으로 2025년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8) [보상금수령단체(3개) 적격심사 현황]

- 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최초 지정) '03.10.17 → (적격심사) '13년/'18년/'21년/'24년
- ②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 (최초 지정) '88.10.4 → (적격심사) '13년/'18년/'21년/'24년
- ③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최초 지정) '20.12.1 → (적격심사) '23년/'24년

12월 31일까지 만료시키는 방식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기존 단체의 실무적 혼란 및 운영 공백으로 권리자의 보상금 지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⁰⁾

문 의 처
02)6788-5376

9) 개정안 부칙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을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10) 첨부한 [참고2] 참조

참고1

저작권 보상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 저작권 보상금 제도 개요

- (보상금) 공익성이 높은 교육 분야의 저작물 이용과 기술발전(복제 등)에 따른 음악 저작권접권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 권리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용자에 대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가짐
 - 저작물 이용자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물 이용 후 저작물 이용내역과 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됨
 - 권리자는 보상청구권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 가능
- (보상금수령단체)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보상금의 징수·분배를 위한 충분한 능력, △평등한 의결권 구성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요건으로 갖춰야 함**

□ 운영 현황 :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10개 보상금 운영

단체명	보상금 종류	법적 근거 (저작권법)	'24년 징수액 (백만원)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심사 현황
① 문학예술 저작권협회	① 교과용도서 ('99년 ~)	제25조 제1항~12항	6,702	(최초 지정) '08.3.13 (적격 심사) '13년 / '18년 / '21년 / '24년
	② 수업목적 ('14년 ~)		3,670	(최초 지정) '08.3.13 (적격 심사) '13년 / '18년 / '21년 / '24년
	③ 수업지원목적 ('16년 ~)		1,473	(최초 지정) '15.8.13 (적격 심사) '18년 / '21년 / '24년
	④ 도서관 ('04년 ~)	제31조 제5항	125	(최초 지정) '03.10.17 (적격 심사) '18년 / '21년 / '24년
② 음악실연자 연합회 <실연자 분야>	⑤ 방송 ('88년 ~)	제75조 제1항	6,648	(최초 지정) '88.10.4 (적격 심사) '18년 / '21년 / '24년
	⑥ 디지털음성송신 ('08년 ~)	제76조 제1항	1,049	(최초 지정) '08.3.13 (적격 심사) '13년 / '18년 / '21년 / '24년
	⑦ 공연 ('10년 ~)	제76조의2 제1항	2,238	(최초 지정) '09.9.14 (적격 심사) '13년 / '18년 / '21년 / '24년
③ 연예제작자 협회 <음반제작자 분야>	⑧ 방송 ('88년 ~)	제82조 제1항	8,270	(최초 지정) '20.12.1 (적격 심사) '23년 / '24년
	⑨ 디지털음성송신 ('08년 ~)	제83조 제1항	2,126	(최초 지정) '20.12.1 (적격 심사) '23년 / '24년
	⑩ 공연 ('10년 ~)	제83조의2 제1항	2,048	(최초 지정) '20.12.1 (적격 심사) '23년 / '24년

참고2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단체명	의견 주요내용
(사)한국음악 저작권협회	- 지정기한 상향 재고 필요 - 보상금 분배업무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상금수령단체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기한을 3년(종래 부관을 통해 지정한 기한)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오히려 분배업무의 미흡함, 조직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함 -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업자, 단체, 기관을 지정하여 특정한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그 지정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기한을 '3년'으로 규정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하도록 규정
(사)한국음악 콘텐츠협회	- 개정안 찬성 - 개정안과 같이 1)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하는 것과 2)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권리자의 권익 강화 및 권리자단체 간 경쟁을 통한 보상금 수령단체의 업무 투명성 제고와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제도임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인터넷 기업협회	개정안 찬성(수정 의견 없음)
대한출판 문화협회	- 개정안 찬성 - 해당 개정법률안의 개정방향은 매우 적합하며 즉시 실행되어야 함 - 또한 보상금 수령단체가 심각한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기한 5년이 지나기 이전에도 재심사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사)한국방송 작가협회	- 지정 '조건'의 내용 구체화 필요 -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요건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단순히 '조건'이라고만 규정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단체 및 저작권자들의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보상금 수령단체가 '중대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한국문학 예술저작권 협회	• 현행 유지 필요 - 현재도 수령단체 지정 고시에 상세한 지정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령단체는 3년 또는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조건을 이행하며 정기보고 및 업무점검, 이행실적에 따른 재지정심사를 받고 있음 -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업무감독권을 행사하여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수령단체 제재 수단은 충분함 - 주무관청이 수령단체의 지정, 취소,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항(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9누66837 판결)인 바, 개정안은 기시행되고 있는 내용의 중복임 - 종전의 단체에 기간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급 입법은 헌법 제13조에 따른 소급효 금지 원칙과 관련성 검토 필요
(사)한국음악 실연자연협회	• 지정기한 연장(5년 → 10년) 필요, 그 외 현행 유지 필요 - 보상금수령단체의 잦은 변경은 보상금 권리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한 연장(5년 → 10년) 및 지정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건의 - 지정취소권 남용의 방지를 위해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규정 신설 보류 건의 - 종전 지정단체의 지정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료시키는 부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음
(사)한국연예 제작자협회	• 현행 유지 필요 - 보상금 단체 지정 시 이미 보상관계 업무규정 개정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업무' 관련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음 -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에 의해 보호됨. '조직 운영'에 관해 폭넓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자율 운영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간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부칙을 통해 종전 지정단체의 지정기간을 일괄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료시키는 방식은, 기존 단체에 급격한 운영 변화를 강요하게 되어 실무적 혼란 및 운영 공백, 나아가 권리자 보상금 지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